

회계감사 업무에 관한 약정서(안)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제 1 조 【 목 적 】 본 약정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회계감사)에 따라 선정하는 회계감사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리시장과 ○○공인회계사감사반(이하 '회계감사기관'이라 한다),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간의 회계감사업무에 대한 약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회계감사대상 】

- ① 제1조의 회계감사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산이 가능한 시점까지의 재무제표로 한다.
- ② 조합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자금수지계산서 및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된다.

제 3 조 【 준수사항 】 이 약정이 체결된 후 '회계감사기관'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회계감사와 관련한 법규와 본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 감독 등 】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회계감사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관련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계감사기관'이 진다.

제 5 조 【 최종보고서 제출 】

- ① 회계감사보고서는 2026년 00월 00일까지 제출한다.
- ② '회계감사기관'은 '시장'이 회계감사를 의뢰한 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시장'과 '조합'에게 통보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보고서 5부(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 수량) 및 USB 2개를 제작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계감사기관'은 감사보고서 작성이나 주요사항 결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회계감사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본 약정에 의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6 조 【 감사보수액 】 이 계약에 의한 감사보수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00,000,000원(금000만원)으로 한다.

제 7 조 【 이행지체 책임 】 ‘회계감사기관’이 제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회계감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회계감사보수 총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조합’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 회계감사보수의 청구 및 지급 】 제6조의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는 감사보고서 제출과 함께 ‘회계감사기관’이 ‘시장’에게 청구하고 ‘시장’은, ‘회계감사기관’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이상이 없는 경우 ‘조합’이 미리 예치한 회계 감사 비용 예치금액에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보수를 ‘회계감사기관’에게 지급한다.

제 9 조 【 비밀의 준수 】

① ‘회계감사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제반사실에 대해 ‘시장’의 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회계감사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계감사기관’이 진다.

② ‘회계감사기관’은 보안각서를 감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 성실의 의무 】 ‘회계감사기관’은 회계감사기관이 수행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중인 기간뿐만 아니라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시장’이 해당 감사업무와 관련된 소송, 민원 등에 대한 의견조회(서면, 구두, 전화 포함)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출장 상담 또는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기간 이후라도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면 약정 기간 내에 약정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장은 다른 정비사업의 회계감사기관 선정대상에서 ‘회계감사기관’을 배제할 수 있다.

제 11 조 【 민원해소의 의무 】 ‘회계감사기관’과 ‘조합’은 회계감사기관이 수행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세입자·기타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해소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장’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회계감사기관’ 및 ‘조합’의 협조를 얻어 민원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12 조 【 조합의 의무 】

- ① ‘조합’은 ‘시장’이 선정한 회계감사기관의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회계감사기관’이 조합의 재무제표 및 평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조합’에게 요구할 경우 ‘회계감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조합이 제공하여야 할 서류는 ‘회계감사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 ② ‘시장’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감사기관’의 감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3 조 【 책임 및 면책 】 ‘조합’이 허위 또는 부정한 자료를 ‘회계감사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회계감사기관’의 책임은 면제되며, 제12조에 의한 자료제공 등을 지연함으로써 감사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계감사기관’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 약정기간 】 본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시장’과 ‘회계감사기관’, ‘조합’이 본 약정서 이행을 협의한 날로부터 제8조에 따라 회계감사보수의 지급이 완료된 때로 한다.

제 15 조 【 약정의 해지, 선정대상 제외 및 경고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1) ‘회계감사기관’이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2)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 내용의 하자 등으로 ‘시장’ 또는 ‘조합’이 타 회계감사기관(법인)에 재차 수감하여 나타난 결과 ‘회계감사기관’의 명확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될 때. 이 경우 최종 판단은 ‘시장’이 한다.
 - 3) ‘회계감사기관’이 감정평가서류에 허위 기재 하였거나, 기타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될 때
 - 4) 기타 약정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회계감사 결과 주요한 민원(집단민원 등)의 발생이나 사업시행에 차질이 초래되었을 때
 - 2) 기타 본 약정서에 위반하여 경고 사유가 발생된 때

3) '조합'이 회계감사의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

제 16 조 【 기타 】

- ① 본 약정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시장', '회계감사기관',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7. .

위 약정자

시 장 구리시장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대표자 : 구 리 시 장 (인)

회계감사기관 ○○공인회계사

주 소 : 경기도 ○○시 ○○동

대표자 : ○ ○ ○ (인)

사업시행자(조합)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수택천로33번길 25, 3층(수택동)

법인명 :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 : 조합장 소 건 우 (인)